

지역아동센터 어린이통학버스 특례적용 대상

□ 특례 사항

○ (특례1-접이식좌석)

- 접이식좌석의 등받이 높이 준수가 불가능하므로 좌석을 탈거하되 해당공간을 입석공간으로 판단하여 승차정원 산정 시 해당 공간만큼의 입석정원 산정 허용(탈거좌석 1석 당 입석정원 1명)

* (조건) 접이식좌석을 탈거한 공간을 입석공간으로 판단하여 입석정원을 산정 하였으나, 운행 시에는 입석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을 것

○ (특례2-좌석안전띠)

- 어린이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이 가능한 2점식 좌석안전띠를 바꾸거나 어깨부분높이조절이 가능한 보조장치 설치 허용

* (조건) 어깨부분 높이조절장치 제품 출시현황을 고려하여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한 2점식 좌석안전띠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는 관련제품 출시 이후 어깨부분 높이조절이 가능한 보조장치를 반드시 설치할 것

○ (특례3-최고속도제한장치)

- 최고속도제한을 해야 하나, 설치가 불가하므로 해당 차량에 한정하여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하여도 운행. 단, 허용 제한속도를 넘으면 과태료

* (조건) 고속주행이 가능한 도로운행 시 최고속도가 110킬로미터를 넘지 않도록 안전운행을 해야 하며, 이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,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별표2 제2호 러목1)에 따라 과태료 100만원 부과

□ 대상차량 : 후원을 통해 제공받은 카니발 11인승 차량 526대*

특례적용 구분	차량 수	비고(대상 조건)
특례1~2 적용	517대	후원을 통해 제공받은 카니발 11인승 중 속도제한장치가 설치 된 차량
특례1~3 적용	9대	후원을 통해 제공받은 카니발 11인승 중 속도제한장치가 미설치 된 차량

* (제외대상) 시설의 장센터 또는 법인 명의로 아닌 차량 / 어린이통학버스 기 신고 차량

□ 튜닝승인 안내

- 특례를 부여받은 526대 자동차만 튜닝승인 신청 가능
 - 튜닝승인 신청 전 특례 대상 자동차 유무를 확인하여 튜닝승인 신청
- 특례2 “좌석안전띠에 대한 적용 안내
 - 카니발 자동차에 2점식 좌석안전띠를 설치하려는 경우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튜닝승인이 가능하며,(현재 카니발 자동차의 경우 승차좌석의 안전띠가 3점식이므로 승차좌석과 2점식 좌석안전띠를 설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 시험을 받아야함)
 - 어깨부분 높이 조절이 가능한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튜닝승인 신청 가능함(제조사 판매 제품)
- 승인문구 예시
 -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(특례대상 : 접이식 좌석, 좌석안전띠)
 - 어린이운송용승합자동차(특례대상 : 접이식 좌석, 좌석안전띠, 속도제한장치)